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시험일: 2017. 11. 16.(목)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한 자(예정자 포함)만 응시 할 수 있음. (단, 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하였으면 응시 가능)

3.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배점·문항 수

교시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배점	문항 수	비고
1	국어	08:40~10:00 (80분)	100	45	
2	수학	10:30~12:10 (100분)	100	30	○ 가형, 나형 중 택 1 ○ 단답형 30% 포함
3	영어	13:10~14:20 (70분)	100	45	○ 듣기평가 문항 17개 포함 (13:10부터 25분 이내)
4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14:50~16:32 (102분)			
	한국사	14:50~15:20 (30분)	50	20	○ 필수 영역
	한국사 영역 문제지 회수 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	15:20~15:30 (10분)			○ 문제지 회수 배부 및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사회/과학/직업탐구 시험: 2과목 선택자	15:30~16:00 (30분)	50	20	○ 선택과목 응시 순서는 응시원서에 명기된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6:00~16:02 (2분)			○ 문제지 회수 시간은 2분임
	사회/과학/직업탐구 시험: 1~2과목 선택자	16:02~16:32 (30분)	50	20	
5	제2외국어/한문	17:00~17:40 (40분)	50	30	

※ 수험생 입실 완료시간

- 1교시 → 08:10까지(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 포함)
- 2, 3, 4, 5교시 →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 문항의 형태: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도록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

※ 문항당 배점: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수학 영역은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차등 배점함.

#### 4. 영역별 출제범위 (선택과목)

구분 영역		문항 수	출제범위(선택과목)
국어		45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수학 (택 1)	가형	30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나형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45	영어Ⅰ,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 (필수)		20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
탐구 (택 1)	사회 탐구	과목당 20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b>9개 과목 중 최대 택 2</b>
	과학 탐구	과목당 20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Ⅱ <b>8개 과목 중 최대 택 2</b>
	직업 탐구	과목당 20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b>10개 과목 중 최대 택 2</b>
제2외국어 /한문		과목당 30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b>9개 과목 중 택 1</b>

## 5. 응시자격

- 가. 2017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나. 고등학교 졸업자
-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6.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 가.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17. 8. 24(목) ~ 9. 8.(금) 09:00~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 나.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구 분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접수자가 일정 지역에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말함.

※ 변경이라 함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됨.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 가능

※ 졸업자 중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다. 시험지구(총 85개 지구)

시·도	시험지구명 (지구수)	시·도	시험지구명 (지구수)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11)	강원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 (7)
부산	동부, 서부 (2)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옥천 (4)
대구	대구 (1)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홍성, 아산 (7)
인천	인천 (1)		
광주	광주 (1)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6)
대전	대전 (1)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해남 (7)
울산	울산 (1)		
세종	세종 (1)	경북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김천, 경산 (8)
경기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안양파천, 고양, 구리남양주, 안산, 광명, 이천, 용인, 군포의왕, 광주하남, 화성오산, 시흥, 동두천양주, 김포, 파주 (19)	경남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 (6)
		제주	제주, 서귀포 (2)

라. 시험장소: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시험장·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마.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1) 공통: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 비치)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cm×세로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이어야 함.

- 짙은 색이 들어있는 안경이나 모자 등의 착용을 금지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 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2)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부
- 4)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제출서류
- 가)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 시각장애 제1급~제3급 해당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 신청자
- 나)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 시각장애 제1급~제3급 해당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 미신청자
  - 시각장애 제4급~제5급 해당 수험생
  - 시각장애 제6급 해당 수험생 중 특별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 다)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 뇌병변장애 제1급~제6급 해당 수험생
  - 상지 지체장애 제1급~제6급 해당 수험생
  - 손, 목, 눈 등 운동장애가 심하여 특별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 라)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 청각장애 제1급~제3급 해당 수험생
  - 청각장애 제4급~제6급 해당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 마)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 청각장애 제4급~제6급 해당 수험생
- 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상지 지체장애 해당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사)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및 특별관리(지필검사 포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 아) 지체부자유 등 기타 시험특별관리 수험생도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첨부하여 제출
- 자)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 진단서 상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필요한 특별관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함. (붙임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참조)
  - 진단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http://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된 지역별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발행하고, 종합병원 전문의의 면허번호 및 서명(날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진단서는 2016. 8. 24. 이후(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검사기록은 병력 및 과거 진료기록, 장애의 원인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의미함.
- 차) 학교장 확인서는 건강기록부 기록, 담임교사 소견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나, 졸업생 대상 학교장 확인서는 건강기록부 기록만 기재된 확인서도 가능

#### 바.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 등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 사.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절차

- 1)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제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상기 경우의 지원자는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 졸업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16.8.24.이후) 발급분에 한함.

- 2)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는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함.
- 3) 응시원서를 개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 사실과 본인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또는 인정받아야 함.
- 4)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되, 대리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함.
- 5)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7. 응시수수료

- 가.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함.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원)	37,000	42,000	47,000

## 나. 응시수수료 면제

1) 대상자: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2) 신청방법

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

나)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다) 신청장소 및 기간: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과 동일

#### 라) 제출서류

(1)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해당 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17.7.24 이후) 발급분에 한함.

(2)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다. 응시수수료 환불

1)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2) 환불신청 기간: 2017. 11. 20.(월) ~ 11. 24.(금) 09:00 ~ 17:00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첨부

- 3) 환불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 4) 환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5) 환불신청 제출서류: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
  -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 6) 환불시기 및 방법: 2017. 12. 22.(금)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 ※ 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 8.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시험 운영

- 가.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라 함은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수형자 등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아야 함.
- 나.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3, 4교시: 3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작·배부하고, 점자정보단말기(2교시)를 제공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함. (5교시 종료시간은 21:43)
  - ※ 점자판과 점필, 음성평가자료 청취용 이어폰(또는 헤드셋)은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함.
  - ※ 음성평가자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로 제공
  - ※ 음성평가자료로서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을 선택한 수험생에게는 화면 낭독프로그램인 센스리더가 설치된 음성지원 PC 제공 (단, 녹음테이프를 선택한 수험생은 본인이 직접 녹음테이프 플레이어 지참 필요)
  - ※ 점자정보단말기는 한소네LX 또는 한소네U2 제공
- 다.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개인 지참 가능)하며, 원활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 및 축소(71%)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5교시 종료시간은 20:20)
- 라.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5교시 종료시간은 20:20)
- 마. 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 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과 같음.
- 바.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장 지정 및 시험실 설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운영함.
- 사.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 9. 시험성적 표기 및 통지

- 가. 성적 표기: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의 유형/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함. 단,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의 경우 절대 평가에 따른 등급만 기재
- 나. 성적통지표 교부
- 1) 교부일: 2017. 12. 6.(수)
  - 2) 교부장소: 성적통지표는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부함.
  - 3) 온라인 성적 제공: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 (<https://csatscore.kice.re.kr>)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폰 인증을 통하여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다. 성적확인 자료 제공: 대학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10.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가. 부정행위 유형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7)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9)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 1)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 ~ 제6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함.

-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교육부 훈령 제155호 제7조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교육부 훈령 제155호 제7조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2)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3)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필요 시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함.

## 11.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가. 공개일시: 2017. 11. 16.(목)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중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나. 공개장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www.kice.re.kr](http://www.kice.re.kr))

다. 이의신청

1) 기간: 2017. 11. 16.(목) ~ 11. 20.(월) <5일간>

2) 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 신청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라. 이의신청 심사: 2017. 11. 21.(화) ~ 11. 27.(월)

마. 정답 확정 발표: 2017. 11. 27.(월), 17: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탑재)

## 12. 기타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유형,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 (임의로 선택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나.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됨.

다. 매 교시별·영역별로 문제지에 표지가 제작되어 있으며,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지에 문제지 구성 내역이 안내되어 있음.

라.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3교시 영어 영역 및 4교시 한국사 영역 문제지는 홀수형/짝수형으로 문형을 구분하여 제공하며,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함.

마.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됨.

- 한국사 영역 시험 종료 후 탐구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대기실로 이동하고, 탐구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선택한 영역과 과목 수에 따라 시험을 시작함.
- 4교시 답안지 1매에 한국사 영역, 탐구 영역 제1선택과목, 탐구 영역 제2선택과목 답란을 모두 포함하여 제공함.
-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선택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시간을 둠.
-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원서에 순서대로 기재하고, 응시원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응시하여야 함.

바. 채점은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실시함.

사.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을 할 수 있음.

- 수학 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함. (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함)

아. 3교시의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CD로 시행함.

자. 수험생은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단, 수험표 분실 시에는 시험당일 이전에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차. 수험생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예비소집에 참가하여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하여야 함. (단, 입실은 금함)

카.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기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

타. 이 시행계획 공고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13. 시험에 관한 안내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http://www.kice.re.kr> 및 <http://www.suneung.re.kr> 참조)
-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붙임]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예시표 표시 내용 ①)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예시표 표시 내용 ②)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예시표 표시 내용 ③)

###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각 장애	중증 (3급)	상기인은 ① 시각장애 3급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경증 (6급)	상기인은 ①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②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상지자체 장애	4급	상기인은 ①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②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청각 장애	중증 (5급)	상기인은 ① 청각장애 5급이며 두 귀의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자로서 ② 일정 거리 이상에서 발생한 소리를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일반적 형태의 듣기평가가 어려워 ③ 듣기평가를 대체한 지필고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